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119호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년 2월 20일 중소베처기업부 장관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201577-1006) * 실명등록에 최대 3일 소요
-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선정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창업 도약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창업기업 모집은 ①일반형, ②대기업 협업형, ③투자병행형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여 공고하며, 상기 ①, ②, ③ 유형 중 1개의 유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사전에 타유형(대기업 협업형 또는 투자병행형)을 신청한 경우 해당유형을 「접수 취소」해야** 일반형에 신청 가능
 - * K-스타트업 누리집→사업신청내역조회→창업도약패키지 타 유형 접수취소→일반형 신청
- ☞ '기업' 또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상기 유형 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유형 중 최종 '접수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평가 진행 예정
- □ 신청·접수 기간 중 주관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K-Startup 누리집' 사업신청 관리-사업신청-사업신청내역조회1에서 변경 가능

<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안) >

유형	① 일반형 (성공환원형 포함)	② 대기업 협업형	③ 투자병행형
지원금	사업화자금 최대 3억원* (평균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1.3억원 내외)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평균 1.5억원 내외) +
	* 사업화자금 최대 2억원 + 성공환원형 선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한국벤처투자(KVIC) 투자연계**
프로 그램	창업 프로그램	대기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창업 프로그램
선정 규모	253개사 (성공환원형은 일반형 중 선정)	100개사	20개사

- * 일반형 중 '성공환원형'을 신청할 경우 협약종료 후 '추가지원사업비'의 일부를 환원(반납) 해야 함 [붙임 6 참고]
- ** 보조(사업화자금)에 1:1 매칭하여 'SAFE' 방식(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예정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
-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도약기 창업기업)
 -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은 [붙임 4]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신청 가능
-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25.5월 ~ '26.2월 예정)
-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기본 지원사업비 최대 2억원, 추가 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 기본 지원사업비 : 창업기업이 일반형 선정 시 배정받은 정부지원사업비
 - 추가 지원사업비 : 성공환원형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사업비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비

•성공환원형 :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에 선정된 도약기 기업 중 추가 지원사업비의 환원을 확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유형

< 지원내용 >

구 분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자금 지원
창업프로그램	•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주관기관별 도약기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지원분야 및 선정규모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총 253개사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

순번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순번	주관기관명	선정규모
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2개사	6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9개사
2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26개사	7	인천테크노파크	30개사
3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3개사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개사
4	부천산업진흥원	27개사	9	한국수자원공사	20개사
5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37개사	10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9개사

-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과거 신청률을 고려하여 배정(주관기관명 가나다순)
- ** 주관기관은 [별첨3] 주관기관별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신청(사업장 소재지, 거주지와 무관)

2 지원내용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5.5월 ~ '26.2월 예정)

□ 지원내용

구분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 최대 3억원(기본 지원사업비 최대 2억원, 추가 지원사업비 최대 1억원)지원 (평균 1.3억원 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 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 이하 + 자기부담사 &	걸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				
사업화 자금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 현금	기부담사업비 현물	
	100%	추가 지원사업비)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 10%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1.5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 (기본 지원사업비 +	창업기업 자	기부담사업비	
		(기준 시원사업비 + 추가 지원사업비)	현금	현물	
	215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100%	69.8%	10.2%	20.0%	
	• (주관기관 공통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시장 진출·확대 지원				
	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투자단계 및 산업 주관사 네트워킹	애로 상담회 운영, IPO		
창업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글로벌 선행기술조사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글로벌 투자 연계 투자 IR 운영,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	•	로, 후속 지원, 네트워킹 ·수요 등을 고려한 지원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프로그램 제공

3 시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패스트 트랙 해당 기업
 - (도약기 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자(기업)
 - (패스트 트랙 기업)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22~'24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 [붙임 4]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업)

---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 신청가능 업력 : 2018년 2월 20일 ~ 2022년 2월 19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경우
- ☞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1])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결정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 기준으로 요건 검토 예정
- ★ <u>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u>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 국외창업기업 해당 시 [붙임 2] 국외창업 기업 요건 및 범위 참조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2호의 국외 창업에 해당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른 해외 법인설립일이(2018.2.20.~2022.2.19.)에 해당하여야 하며, 국내 사업자를 보유한 국내 법인·국내 영업소로 신청(해외 연락사무소, 사업자(국외 사업자 등)는 신청·접수 불가)
- ★ <u>온라인 신청 시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하며, 국외 창업 기업 해당 시</u> 국외 창업기업 요건 확인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제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 창업중심대학(도약기 창업기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신청 제외 대상임

- * <u>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신청불가)</u>: ^①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19~'20년 창구, '20년 마중, 정글, 엔업), ^②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22년 에그, 씨앗, 이웃, 가치, 스타)
- ** 단,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17~'21년)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⑥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5]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기업)

-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거래 및 창업사업 통합정보 관리시스템(PMS)를 통한 사업비 지출이 불가한 자 (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 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③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u>'25. 2.20.(목) ~ 3. 13.(목), 16:00까지</u>

< 유의 사항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u>마감일 2~3일 이전에</u>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u>신청·접수 마감시간 전까지</u> 수정 가능)
 -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유형 변경 불가) 단,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 마감일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③ <u>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u>하고, 신청·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등 <u>일체의 내용</u> 변경·삭제 불가
- ④ 신청·접수 마감시간까지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 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기업인증: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 ***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 ① 사업 신청은 <u>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접수</u>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접수하는 경우 탈락 처리
-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일반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첨 2] 양식)
 - 사업자등록증, 가점 증빙 등 [별첨 2]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확인
 -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③ 기타 제출서류	파일 첨부	30MB

5 평가 및 선정

-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요건검토**자격기준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자
확정
~ '25.4월 초

② **서류평가**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2배수 내외 선정)
~'25.4월

③ **발표평가**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이내) ④ 최종선정 선정 확정 및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 '25.5월

신청자(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될 시 선정·협약 취소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외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①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 가점은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가점 증빙서류만 인정
 - ** 평가 분과는 모집 세부 분야(전문기술분야)에 따라 구분되며, 평가 과정에서 변경· 통합될 수 있음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요건검토를 위한 서류를 요청할 예정이며, 창업기업 확인서 미제출 시 협약체결 대상 에서 제외 가능
 -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은 발급기간(약 3주)을 고려하여 사전준비 필요, 창업기업확인서 제출처 등 **자세한 사항은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별도 안내예정**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 >

구분	대상	점수	비고 (제출서류 등)
가점	• 최근 1년 [*] 이내 5억원(현금) 이상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 * 투자계약일이 최근 1년('24.2.20.~'25.2.19.) 이내 이고, 해당 투자금이 공고 마감 시('25.3.13.)까지 입금된 증빙이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1점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구분	대상	비고 (제출서류 등)
서류평가 면제	 '24년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25.1월에 개최한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제출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 중 청년재창업자* * 청년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연령이 만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확인증

-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 및 우선선정 대상자일지라도, 본 사업 신청·접수(사업계획서 및 증빙제출)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는 사업 신청(온라인) 시 해당란 체크 필수
- **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자의 경우 서류평가 이후의 평가 과정은 타 지원자와 동일 하게 진행하며, 서류평가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최종 선정 T/O를 두고 있지 않음
- *** 서류평가면제 대상 중 도전!K-스타트업 2024 통합본선 왕중왕전 진출팀 및 CES('25.1월 개최) 혁신상 수상기업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 아이템과 기(旣) 지원(수상)받은 사업 아이템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동 사업 신청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 15~20분 이내 + 질의응답)
 -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우선선정 대상 기업도 정부지원사업비 배정을 위해 발표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 우선선정 대상 >

* '24년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대상 수상팀 및 최우수상 수상팀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5.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4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구분	대상 기업	비고 (제출서류 등)
입상자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우선선정	* 수상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5.1월에 개최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단, 중소벤처기업부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가한 기업 중 수상 아이템, 수상기업, 수상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24년 'D-DAY'(디캠프),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아산나눔재단)	

-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 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025년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프리TIPS, 창업사업화, 포스트TIPS), 특화 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민관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등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 ※ 단,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창업기업별 정부지원 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필요성) 및 현황 등	
실현가능성	• 창업아이템 목표시장(고객) 분석, 시장진입 현황 등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 사업화 추진 전략 및 자금 운용 계획 등	
	• 기업 구성 및 보유 역량, 보유 인프라 활용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ightarrow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25. 2. 20.

창업기업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

'25. 2. 20. ~ 3. 13., 16시까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25. 5월 (요건검토는 상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자기부담사업비 입금 등)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5.5월~6월

Û

4	선정 공지
•	K-Startup 누리집
	'25 다윈 마

'25.5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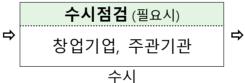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K-Startup 누리집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사업수행 창업기업

협약일 ~ '26.2월 (10개월)



최종보고 및 점검 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6.4월

6 │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사업 신청 과정에서 <u>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u>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화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및 기타 심의위원으로 참여 불가함
- '성공환원형'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신청 시 희망(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선정된 이후 추가 지원사업비(성공환원형)를 포기할 경우 '일반형' 선정도 취소됨
 - * '성공환원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6] 확인
 - < K스타트업 누리집 성공환원형 사업 신청 화면(4. 일반현황) >

사업비 신청		✓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기본 지원사업비 신청 금액(단위 : 원) 🗸		
성공환원(추가 지원사업비)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 신청 마감시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발표 및 대응** 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불참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에 배정된 창업기업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다음 단계 평가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등은 선정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창업진홍원 또는 주관기관이 취하는 연락에 선정자가 응하지 않는 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국외창업의 경우, 사업에 신청·선정한 국내 법인·영업소에서 해외법인(본점)의 사업화를 위한 **정부지원금 집행·관리 등이 가능** 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될 수 있음
- '25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선정기업 중 성공환원형 신청기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비 외에 '추가 지원사업비'를 지원 반을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붙임 6] 참고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와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25.5~6월 예정)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해당시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음

7 기타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신청 등 사업 관련 문의)** 주관기관 담당자

(주관기관명 가나다순)

No	주관기관명	지역	연락처	현장 사업설명회 일정 (주소)
1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남	055-291-9336, 9307, 9308, 9345, 9356	■ '25. 3. 5.(수) 14시~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4층 413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2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053-950-6095, 6092, 6097	■ '25. 2. 25.(화) 14시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층 307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3	광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광주	062-610-2456, 2423, 2461, 2410	■ '25. 2. 25.(화) 14시 ~ 전일빌딩 9층 다목적강당 (광주 동구 금남로 245)
4	부천산업진흥원	경기	032-716-6510, 6511	■ '25. 3. 5.(수) 14시 ~ 그라운드 21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21층)
5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	043-299-8690~4	■ '25. 3. 4(화) 16시 ~ 이안스퀘어 1층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 191)
6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울산	052-283-7132~5	■ '25. 2. 26.(수) 14시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 (울산 북구 산업로 915)
7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032-858-6592, 6593	■ '25. 3. 4.(화) 14시 ~ 인천스타트업파크 인스타1 408호 교육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8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서울	02-2095-1734, 1740, 1752	■ '25. 2. 26.(수) 14시 ~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3층 BI공간 (서울 중구 칠패로 36, 연세봉래빌딩)
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042-629-5368, 5385~5389	■ '25. 2. 25.(화) 10시 ~ 대전역 한국철도공사(본사) 2층, KTX 산천 회의실(대전 동구 중앙로 240)
10	한국탄소 산업진흥원	전북	063-219-3673~6	■ '25. 2. 28.(금) 14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만성로 106)

- *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 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창업 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상세 구분	창업여부	
	Š	·업(사업을 :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창업아님		
	상속/증여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게이기기어		이종창업	-	창 업	
개인기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도조차어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창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창 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H1017101		이종창업	-	창 업	
법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11 * 1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원		l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기사성대 변경	형태 변경 이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로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국외창업 요건 및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의 2의 <u>"실질적인 지배력"</u>에 대한 요건임 단,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불구하고, <u>창업기업이 아닌 법인이 국외에 법인을</u> 설립하는 경우에는 국외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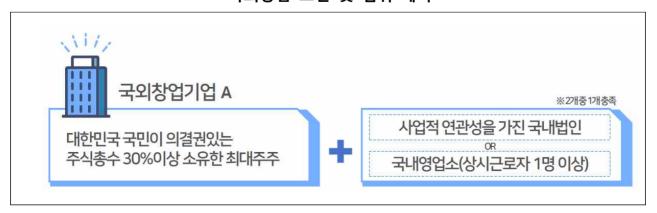
□ 국외 창업 요건 ※ 아래 요건 ①,② "모두" 충족되어야 함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 ②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u>법인의 최대주주</u> 또는 <u>최대</u> <u>출자자의 지위</u>를 가질 것

2 국외 창업기업 범위 ※ 1 요건 모두 충족한 외국 법인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 충족

- **대한민국 내에 사업적 연관성***을 가진 **법인**(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모회사를 말한다)을 **보유**할 것
 - * [참고]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9조(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국내 법인과 그 법인이 국외 창업한 외국법인 상호간에 물품 또는 용역 등 상업상 거래를 하는 것, ②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 고용
-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
 (상시근로자의 국적은 불문)
 - * **[참고]** 상법 614조

< 국외창업 요건 및 범위 예시 >



③ 국외 창업 여부 확인표

○ (국내부터 창업 : 先 국내 창업 → 後 해외 창업)

국내	국외	국외창업 여부	국외창업 기산일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30% 이상 소유+대표성)	해당(국내경제 기여요건 충족시)	국외 법인 설립일
(유지)	법인 설립 (30% 미만 소유+대표성)	비해당(국외창업 아님)	-
개인사업자	법인 설립 (30% 이상 소유+대표성)	해당(국내경제 기여요건 충족시) * 국외 법인의 국내 영업소 신규설립	국외 법인 설립일
(폐업)	법인 설립 (30% 미만 소유+대표성)	비해당(국외창업 아님)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 (30% 이상 소유+대표성)	해당(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	국외 법인 설립일
(유지)	법인 설립 (30% 미만 소유+대표성)	비해당(국외창업 아님)	-
법인사업자	법인 설립 (30% 이상 소유+대표성)	해당(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 * 국외 법인의 국내 영업소 신규설립	국외 법인 설립일
(폐업)	법인 설립 (30% 미만 소유+대표성)	비해당(국외창업 아님)	-

^{*} 국내 창업 이력 관련 현행 시행령상의 창업 제외 기준 등을 미적용한 예시

○ (해외부터 창업 : 先 해외 창업 → 後 국내 창업)

국외	국내	국외창업 여부	국외창업 기산일
	별도 법인 없음 (영업소(지점) 설립)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사업자 (유지)	법인 설립 (30% 이상 소유)	해당(국내 경제기여요건 충족시)	국외 법인 설립일
	법인 설립 (30% 미만 소유)		국외 법인 설립일

^{*} 국내 창업 이력 관련 현행 시행령상의 창업 제외 기준 등을 미적용한 예시

▶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의 2 및 제 3호의 2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 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u>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u>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내 경제 기여 요건 : 시행령안 제3조의2 제1호, 제2호

^{**} 국내 경제 기여 요건 : 시행령안 제3조의2 제1호, 제2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_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패스트트랙 자격기준

□ 패스트트랙 해당 사업

구분	해당사업	자격요건
* 71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u>초기</u>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창업기업)	참여기업 (중단·포기·실패 기업 제외)
재도전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 패스트트랙 해당 기업 자격 요건

구분	세부 자격요건	증빙서류
	① '22~'24년 초기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3	② '22~'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중 기본	③ '22~'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참여기업 - 증빙자료 불필요 (창업진흥원 확인)	
1개	* 단, 참여기업의 대표자, 기업명, 아이템이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24년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의 경우, 협약종료 전 중단·포기·실패 시 최종선정 제외	
	①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대표자 제외) 10인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이력 및 가입자명부
①~③ 중 필수 1개	② 연 매출액 20억원 이상 기업(*'24년 결산 기준)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711	③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원 이상 기업	-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입금증 등

^{*} 증빙자료는 1단계 서류평가 통과 시 주관기관 별도 안내에 따라 해당자만 제출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초격차 스타트업 1000 ⁺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4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프리 TIPS)	중소벤처기업부
5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6	·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포스트 TIPS)	중소벤처기업부
7	・특화창업패키지(통합창업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8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9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0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2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4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5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6	·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3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4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6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7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8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공환원형 주요사항 안내

□ (운영개요) 사업신청 시 '성공환원형'을 희망한 창업기업 중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 사업화자금을 추가로 지원

구분	용어 설명		
성공환원형	· 일반형에 선정된 도약기 기업 중 정부지원사업비의 환원을 확약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유형		
기본 지원사업비	· '일반형' 선정 시 배정받은 정부지원사업비		
추가 지원사업비	· <u>기본 지원사업비의 50%</u> 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 * 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 지원사업비의 50%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음		
성공환원금	· 성공환원형 창업기업 중 최종평가 판정 결과, '성공(최우수, 우수, 보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추가지원사업비의 최대 50%를 성공환원금 으로 납부		
반납(납부)	· 협약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5년 동안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을 성공환원금으로 반납(납부)		

- □ (지원대상) '25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선정기업(자) 중 선정평가 순위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성공환원형' 창업기업으로 선정
 - * 지원사업 신청시점에 '성공환원형'을 희망(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선정된 이후에 '추가지원금'을 포기할 경우 '일반형' 선정도 취소됨
 - ** '일반형' 선정평가 순위 및 예산 한도에 따라 '성공환원형' 창업기업을 선정하며 공고신청 시 '성공환원형'을 희망(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후 '추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 (추가 지원사업비 결정 금액) 일반형 선정 시 배정받은 기본 지원사업비의 50%로 정액 배정이 원칙이며, 임의로 추가사업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 단, 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주관기관별 마지막 순위로 성공환원형에 선정되는 경우 기본 정부 지원사업비의 50% 미만으로 배정될 수 있음
- □ (사업비 사용) 추가 지원사업비도 정부지원사업비로 간주되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관리

< 총사업비 구성 예시('성공환원형'에 선정된 경우) >

기본 지원사업비*	추가 지원사업비**	최종 정부지원사업비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D)		총사업비
(A)	(B)	(C=A+B)	현금	현물	(E=C+D)
100백만원	50백만원	150백만원	22백만원	43백만원	215백만원
		(69.8%)	(10.2%)	(20.0%)	(100%)

- * 주관기관의 사업비 배정 심의 후, 일반형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배정받게 되는 기본 정부지원사업비
- ** B=A의 50%(단, 평가결과에 따라 기본지원사업비의 50% 미만으로 배정될 수 있음)

- □ (성공환원금 반납 기한) 창업기업 협약종료('26.2월) 후, '27년부터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소 1%)을 다년(최대 5년)에 걸쳐 반납
- □ (성공환원금 반납 기준) 창업기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성공" 판정 시 추가 사업화자금의 최대 50% (다년간, 매년 전년도 매출액 기반) 반납
 - * 성공환원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하며, 매 년 납부금을 고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 내 미납되는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을 적용 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음
- □ (추가지원사업비 환수 기준) 성공환원금을 불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최종평가 시 미흡 또는 극히불량 판정을 받는 경우 등 지침 상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여받은 경우 환수 조치
 - 성공환원금을 기한 내에 미납하는 등 **불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 의무액을 추가지원사업비의 50%로 변경하여 환수 조치
 - 성공환원형 창업기업 중 최종평가시 '미흡*'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추가지원
 사업비의 70%, '극히불량**'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은 추가지원사업비의 전액
 환수 조치
 - * 미흡 :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사망, 천재지변, 외부 환경 변화 등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실패하는 경우(성실실패)
 - ** 국이 불량: 기존 사업자를 휴폐업한 경우 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불성실 실패) < 성공환원금 회수 또는 추가지원사업비 반납금 환수 기준(예시) >

	정부지원사업비		최종평가 판정 결과 기준 회수 및 환수금			
정-			ИП	실패		
		(예시)	성공	미흡	극히불량	
	기본지원사업비 1.3억원 추가지원사업비의					
청부 지원	추가지원사업비	0.65억원	최대 50%을 성공환원금으로 회수 (최대 0.325억원)	추가지원사업비의 70% 환수	추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사업비	합계	1.95억원			(0.455억원)	(0.65억원)

※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개정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선정자 대상 으로 추가 안내 예정